사업협약서

본 협약서는 다음 당사자 사이에서 2019년 06월 04일 체결되었다.

PF 대주 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

[redacted]

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

[redacted]

중도금대출 대주 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
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, 101호(중앙동, 창원리제스타워)

중도금대출 추가 대주 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
서울 강남구 언주로 428, 10층(역삼동, 아비스타 알앤드디센터)

전 문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92-28, 30, 42, 59번지 공동주택/업무시설/1,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(이하 "**본건 사업**")과 관련하여, 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, 주식회사 휘[redacted]건설(등록번호: [redacted] 주식회사 하[redacted]종합건설(등록번호: [redacted] 사이에 2019년 6월 4일자로 중도금대출업무협약서(이하 "중도금대출협약(서)"를, 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 등 사이에 2019년 6월 4일자로 분양관리신탁 우선수익자 변경계약서(그 특약을 포함하며, 이하 "분양관리신탁계약(서)"를 각 체결하였다.

한편, 본 사업협약서의 당사자들은 각 대주의 대출금 상환 집행순서를 정하기로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본 협약서를 체결한다.

1. 본건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상 신탁부동산의 처분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공매 처분에

PF대주 겸
중도금대주

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
대표이사 [redacted]

(인)

PF대주

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
대표이사 [redacted]

(인)

중도금대주

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
대표이사 안 재 영

(인)